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69

발의년월일: 2019. 8. .
발 의 자: 이민옥의원
찬 성 자: 황선화의원, 남연희의원
임종숙의원, 이성수의원
민운기의원 (총5명)

1. 제안이유

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통하여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자원봉사캠프”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5호)

나.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(안 제11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구청과 협의

다. 입법예고: 2019. 8. 12. ~ 8. 16.(5일간)

라. 기 타: 신・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자원봉사캠프”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(이하 “캠프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“자원봉사캠프”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
<신 설>	제11조의2(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(이하 “캠프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18조 (생 략)	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
제19조 (생 략)	제18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

< 관 계 법 령 >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